법무법인 세안(世按)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(블루콤 타워, 1201호) / T: 02-3473-0999/F: 02-3473-0997

시행일자: 2021. 2. 3.

TEL: (02)3473-0999(代)

FAX: (02)3473-0997

수 신 : (주)아이티아이즈

제 목 : 정보보호정책서의 법적 준거성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

표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1. 질의의 요지

(주)아이티아이즈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문 서로서 검토하고, 시행 예정인 정보보호 정책서가 법적 준거성을 충 족하는 지 여부

2. 법적 준거성 검토

가. 정보보호 정책서 작성 목적

- ㈜아이티아이즈에서 제정한 정보보호정책서는 (주)아이티아이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컨설팅, 마이그레이션, 매니지드, XaaS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
- 기업의 정보보호정책서는,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, 위험관리, 위반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유무 등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.

나. 정보보호 관련 법령

(1) 기업내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서 작성 기준이 되는 근거법으로는,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, 클라우드컴퓨터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을 들 수 있고, 본 정보보호정책서의 목적상 <u>클라우드컴퓨터의</u>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주요한 준거법률이 될 것이다.

TEL: (02)3473-0999(代) FAX: (02)3473-0997

(2) 클라우드컴퓨터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및 시행규칙

클라우드컴퓨터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44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6. 9.>
- 1. "클라우드컴퓨팅"(Cloud Computing)이란 집적、공유된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 신설비,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(이하 "정보통신자원"이라 한다)을 이용자 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.
- 4. "이용자 정보"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(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)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.

제23조(신뢰성 향상)

-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· 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<u>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·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(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)을 정하여 고시</u>하고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25조(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)

제26조(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)

제27조(이용자 정보의 보호)

제29조(손해배상책임)

제35조 벌칙규정


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

[시행 2017. 8. 24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, 2017. 8. 24., 타법개정]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사이버침해대응과), 044-202-6438

제1조(목적)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201호

법무법인 세안(世按)

TEL: (02)3473-0999(代)

FAX: (02)3473-0997

제3조(관리적 보호조치)
제4조(물리적 보호조치)
제5조(기술적 보호조치)
제6조(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)
제7조(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)

- 클라우드컴퓨터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,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·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(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침해사고 통지, 이용자 정보보호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.
-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<u>'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'</u>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내용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고시하고 있는 바,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제공자는 위 법률 및 고시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정책서 작성시에도 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
다. 법적기준 준수여부

(1) (주)아아티아이즈 정보보호정책서 제5조에서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

TEL: (02)3473-0999(代) FAX: (02)3473-0997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, 정보보호 담당자, 정보보호 관리자,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하는 정보보호 실무조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있다.

- (2) 또한, 같은 정책서 제 5조 제 6항에 따라,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책임 및 역할에 대하여 이용자와의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, 제12장 개인정보 처리 안 전한 관리 규정을 통해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상세 히 규정하고 있다.
- (3) 정책서 제 6조(내부인력 보안)에서는 클라우딩컴퓨팅 서비수제공자 가 위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서 부속문서 포함, 서비스 설비, 자원,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규정 및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기술적, 물리적, 관리적 보호조치를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- (4) 상기 정책서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인력의 보안

TEL: (02)3473-0999(代)

FAX: (02)3473-0997

및 내부적 비밀유지 서약을 통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, 관리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정보보호교육 규정을 두어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.

- (5) 위 정보보호정책서에는 또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침해사고 대응에 대하여 대응절차 수립, 대응절차 마련, 이용자, 제공자의 책임 및 절차규정, 침해사고에 따른 보고 및 협력체계, 대응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- (6) 클라우드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보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접근통제(제8장), 네트워크보안(제9장), 데이터보호 및 암호화(제10장)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,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에 요구되는 추가 보았으구사항에 대한 기준도만족하고 있다(제11장 공공지간보안요구사항).

TEL: (02)3473-0999(代)

FAX: (02)3473-0997

3. 결론

- 가. (주)아이티아이즈의 정보보호정책서는 관련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관리적, 물리적,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보호, 공공기관보안추가요구사항 및 침해시 대응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작성되어 있다.
- 나. 각 규정이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, 이는 관련 규정을 오히려 상세하고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선해 해석이 가능한 부 분이라고 판단된다.

2021. 2. 3.

법무법인 세안(世按)

담당변호사 이 임 표

TEL: (02)3473-0999(代)

FAX: (02)3473-0997

본 의견서는 귀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귀사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사전에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